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12년도 업무계획

2012. 1.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목 차 〉

< 2012년 업무 계획 >	1
I. 대내외 인권환경의 변화	3
II. 2012년도 업무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	7
<2012년 업무계획 총괄도>	10
III. 2012년도 세부목표별 업무계획	11
1.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 강화	11
2.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21
3.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29
4.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38
5. 차별시정 강화	46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56
<기획사업>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59
<기획사업> 정보인권 증진	61
<일반사업> 인권위 역량강화	63
< 2011년 업무추진 실적 및 평가 >	71
I. 총 평	73
II. 추진목표별 실적 및 평가	76

2012년 업무 계획



I. 대내·외 인권 환경의 변화

1. 대내적 환경 및 여건

- 2009. 4. 위원회 조직과 인력 축소 후, 2011. 10. 10. 장애차별조사 2과 신설과 정원 21명이 증원되었으나, 증가하는 다양한 인권현안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대응 노력 필요 상황
- 그간 인력의 한계로 기획조사에 역량을 투입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1년도 직권조사는 괄목할 만한 증가임. ‘인화학교 사건’ 예와 같은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자기권리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향상 및 인권현안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기능 확대 요구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직권조사처리	3건	3건	16건

- 진정사건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나, 2011년 접수 및 처리 건수는 하향 감소(2010년 장애차별 집단진정 발생)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12.5현재)
진정사건접수	6,985건	9,168건	6,857건
진정사건처리	6,788건	8,398건	6,709건

- 2011년 정책권고의 경우 NAP권고안,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인권증진 3개년 중기계획, 기업과 인권 국제세미나 등 규모있는 사업추진과 인력부족 본격 작용으로 역량 집중에 한계가 있었으나, 2012년도에는 현안 정책 권고 강화가 요구됨

연도별	2010년도	2011. 11.현재
정책권고 건수	42건	33건

- 인권위 설립 10년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인권인프라 구축 및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 등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생활인권 실천의제 연구·발굴이 긴요한 시점
- 한편,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조직 기능별 방향과 활동방식에 대한 환류(Feed back)와 점검을 통해 새로운 대안모색으로 성숙된 존재감이 요구되는 상황
- 인권개념의 확장, 사회권에 대한 역할요구, 인권의 주류 및 세계화, 인권의 전문화 등의 추세에 따라 국가인권기구로서 바람직한 역할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역량강화 필요 상황
- 아울러, 구성원의 자긍심과 사기는 성과제고의 핵심사안으로서 사기 양양을 위한 대안 모색과, 인권기구로서 다양성과 일체감의 조화를 통한 조직 시너지 확보가 긴요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권기구로서 역할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인지도는 미흡(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결과 일반국민 55%가 잘 모른다고 응답)한 실정. 그동안의 홍보방식 등을 재점검, 인권 가치 및 인권위 역할에 대한 홍보대안이 요구됨

2. 대외적 환경 및 여건

- 인권관련 법률의 제·개정
- 인권교육의 의무화를 규정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 인권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외에도 차별금지법, 인권교육법, 북한인권법 등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인권관련 법률의 제·개정 현황>

법률	제·개정일	시행일	비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	2011. 8. 4.	2011. 8.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1. 6. 7.	2012. 6. 8.	인권교육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제정)	2011. 3. 29.	2011. 9. 30.	
정신보건법(개정)	2010. 1. 18.	2010. 3. 19.	인권교육 의무화

※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2011.3.31.)

□ 국제 인권규범의 확산 및 국제사회에서 적극적 역할 요구

-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점차 국제규범화 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규범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보여짐
-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도 도입이후 국가 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7개 인권조약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유엔의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및 이행지침」,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 인권원칙, ISO26000,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지침 등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다양한 국제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2011. 9. 기업과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국가 인권기구회의 개최하여 '서울성명서(Seoul Statement)'를 채택함
- 한편, 유엔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및 공무원, 군대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각 국가는 인권교육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2015년까지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의 확산

-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면서 주민자치 생활영역에서 인권친화적 문화형성의 계기가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인권조례의 표준화, 또는 기준제시가 필요함
 -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
 - 경상남도 인권증진 조례
 -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증진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증진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등

Ⅱ. 2012년도 업무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

1. 기본 방향

- 새롭게 시작된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년~2014년)」이 적용되는 첫해로서 다양한 인권수요를 반영하고자 노력
-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권증진계획 중 성과목표에서 올해의 중점사업을 골고루 선정하여 해당 영역에서의 인권개선 효과 극대화 도모
- 5대 전략목표,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에서의 정책권고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사구제, 법·제도 개선, 교육·홍보, 협력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전개함
- 국민 인권교육 수요와 중요성을 감안, 인권교육을 전략목표로 편재하여 인권교육 기능 강화함
- 국제 인권흐름과 사회권 관련 인권수요가 강하게 표출되는 점을 감안 사회권 정책의제 적극 반영하고, 생활인권 의제 확대를 통한 인권의 대중화를 도모함.

2. 주요 업무

①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 취약계층의 노동권 등 사회권 보장·증진, 자살원인의 조사·연구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의 실질적 보장 및 인권친화적 법령의 제개정 노력을 통한 인권의 제도적 기반구축
- 국제인권조약, UPR 이행 모니터링 및 인권기준의 정착방안 모색을 통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②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및 인권교육 강화

-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등 기획조사 실시, 군 영창, 구금 시설, 소년원 등 방문조사를 통한 기획조사 확대
- 진정사건의 효율적 처리 개선 방안, 차별행위 조사절차 및 기법 연구 등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인권취약지역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제고
- 인권교육 법제화 및 국내·외 협력 촉진, 학교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한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종사자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 공무원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군인 및 전의경 대상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
-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온라인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권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③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및 차별시정 강화

-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이주민권 가이드라인 이행 모니터링, 국내체류 이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원 체계 개선, 연근해 어업 분야 인권보호 및 난민의 인권증진 등 추진
- 노인인권의 및 아동인권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및 사각지대 아동인권 개선 등 추진
- 시설분야별 종합적 접근을 통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
-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수립, 자립생활 기반 구축, 장애인 교육권의 실질적 이행 등을 통한 장애인차별 시정 강화
- 여성감정노동자, 가출청소년의 인권개선을 위한 성차별시정 강화, 채용, 정년 등 연령에 의한 차별개선
- 대학교의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조사,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추진

④ 특별사업·기획사업 및 일반사업의 추진

- 특별사업인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기획사업인 기업경영의 인권 문화 확산, 정보인권의 증진을 추진함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인권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독립성 강화,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인권위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되 일반사업으로 관리함

2012년 업무계획 총괄도

비 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 명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5대 전략 목표	성과 목표
I.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유권의 보장의 강화 2. 사회권의 확대·증진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4.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5.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 6. 인권지수 개발
II.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사회 이주민인권증진 2. 노인인권 향상 3. 아동·청소년 인권향상 4.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III.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조사 확대 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3. 인권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
IV.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2.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 3. 인권 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V. 차별시정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차별시정 강화 2. 성차별 시정 강화 3.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개선 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5.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특별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획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2. 정보인권 증진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인권위 역량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 독립성 강화 2. 국내외 협력 강화 3.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Ⅲ. 2012년도 세부목표별 업무계획

I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1. 자유권의 보장·강화

□ 자살 원인의 조사·연구 및 자살예방활동 강화

- 자살 예방에 관해서는 총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단순한 제도와 운동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명존중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
- 단편적인 조치로 자살예방을 해결하기보다 자살예방을 위한 원인 분석에 있어 사회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 및 연구가 필요
 - '09년 OECD 국가 자살율(10만명당) : 한국(28.4명)→헝가리(19.8)→일본(19.7)→영국(6.2)→그리스(2.8)

-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 자살 원인 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

- 위원회가 선관위에 선거 UCC 관련 운영지침에 대하여 권고하였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선거전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 있음
- 따라서 국제사회의 기준 및 우리 위원회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함.

-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의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선거관련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제도적 개선 마련
 - ※ 최근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12.29.)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 수집은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도 요구되어지고 있으나, 형사절차 부분은 아직까지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실무와 제도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사기법과 증거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증거 유형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증거수집절차를 마련 및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 기법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법제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를 면접조사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함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한 법·제도를 분석함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한 해외 사례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함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 및 정책 방향 제안

2. 사회권의 확대·증진

□ 취약계층의 노동권 등 사회권 보장·증진

- 사회권 보장 정책의 미흡함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고,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로부터도 사회권 증진 관련 다수의 권고를 받은바,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의 개발과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사회의 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 취약계층 인권개선, 그리고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분야에 있어 취약계층의 인권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요양보호사,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개선 방안 검토,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 근로빈곤층의 노동권 개선 방안 검토

- 요양보호사 인권개선 정책 검토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 폭력·폭언에의 노출 등 그 처우가 열악하여 장기요양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권개선 검토

-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개선 정책 검토

2011년 문화예술스포츠 등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일상적인 고용 불안, 저임금 및 상습적 임금체불, 일상적 차별 등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개선 검토

- 최저임금제 검토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제도이나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절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통한 개선방안 논의 필요

○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등 사회권 현안에 대한 대응

□ 간접고용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간접고용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와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외부업체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9조는 중간착취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1998년 파견법이 신설되며 예외를 허용하게 되었음. 그러나 제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허용하려고 했던 입법취지와는 달리 상시 업무임에도 이를 외부업체에 맡기는 사내 하도급, 외주, 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이 생겨남.
-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중개수수료 실태 및 근로조건과 노동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된 바 없기 때문에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와 임금·노동시간·4대 보험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의 인권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서비스업종의 중개수수료 실태조사

○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분석

○ 관련 국가 정책 및 법령 분석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강화

-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 모니터링 강화하여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이행에 기여
 - ※ 2012년 정부는 자유권규약(상반기) 및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8월)를 제출할 예정인바, 국가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위 독립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하반기), UN에 제출(2013년 예정)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입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인권규범시스템 참여 확대

-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국내이행 모니터링 강화
 - 국내이행 상황(국내법제 현황, 판례 등) 검토, 필요시 전문가 자문 실시
 -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권고사항을 널리 의제화하여 법제 개선 권고의 기반 마련
 - 검토내용 및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권 규약 국내이행 강화방안 마련
 - * 자유권 규약 국내이행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자유권 규약 인권위 독립 보고서 마련에도 대비
- 고문방지협약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국내이행 모니터링 강화
 - 국내이행 상황(국내법제 현황, 판례 등) 검토, 필요시 전문가 자문 실시
 -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2012.8월 제출) 준비시 적극 참여하여 위원회 입장 반영
 -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권고사항을 널리 의제화하여 법제 개선 권고의 기반 마련
 - 검토내용 및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고문방지협약 국내이행 강화방안 마련
 - * 고문방지협약 국내이행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고문방지협약 인권위 독립보고서 마련에도 대비
- 사회권 규약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국내이행 모니터링 강화
 - 사회권 분야가 다양함을 감안하여 최근 이슈가 되는 사회권 분야를 선정하여

- 국내이행 상황(국내법제 현황, 판례 등)을 검토, 필요시 전문가 자문 실시
-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권고사항을 널리 의제화하여 법제 개선 권고의 기반 마련
- 검토내용 및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권 규약 국내이행 강화방안 마련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가능성 검토
 -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인권조약 내용의 국내법제 현황 파악 등 가입 가능성을 검토, 필요시 전문가 자문 실시
 -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권고사항을 널리 의제화하여 법제 개선 권고의 기반 마련
 - 검토내용 및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 방안 마련
-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강제실종 협약

□ UPR 이행 모니터링 및 인권기준의 정착방안 모색

- 1기 UPR(2008~2011년) 권고사항 이행에 대해 검토하고, 2기 UPR 권고(11월 예정)를 대비한 관계기관과 협의, 정보보고서 준비 등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에 기여
 - ※ 인권이사회는 모든 국가(193개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periodic)으로 공동검토(Peer Review)한다는 취지로 UPR 제도를 도입함
 - ※ 2기 UPR 일정 : 국가보고서(8월경), 워킹그룹 심의-권고초안(10월경), 보고서 채택(11월경)
- 2008년 UPR 권고 내용 이행 모니터링, 정부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인권위 정보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검토하고 UPR 실무그룹 및 UN 인권이사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인권위의 입장 전달

□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모니터링 강화

- 2011. 7.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49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총 49항의 최종견해 채택. 이의 국내 이행을 집중 점검하고 견인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 지속적으로 수행
- CEDAW 협약과 그 권고사항이 국내법 체계 및 법원 판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확산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필요
 - ※ 2012년에 CEDAW 권고 이행을 위한 과제 확인 및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2013년, 2014년에는 세부과제를 타겟으로 하여 이행 촉진 업무 수행

- 제49차 CEDAW 입법·사법부문 권고 관련 전문가 토론회
 - CEDAW 권고 사항 중 입법조치 및 사법부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내외 법체계, 판례 등 비교분석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공론화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 관계기관 모니터링 틀 정비
 - 제7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관련 부처 및 기관 확인, 이행과제 관련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보고 체계화

4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 군 장병 기본권증진을 위한 인권상황 개선

- 군인 인권상황의 체계적 파악을 통한 제도개선
-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사건 적극 해결을 통해 인권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온 군인 인권 증진
- 위원회의 군인인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 구성·운영
- 구타·가혹행위 등 유형분류를 통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제도 개선권고
- GOP 등 격오지 부대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 군 전체 의료체계개선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는 차후 중장기 과제로 접근

□ 군대 내 여성 인권 증진

- 1950년 시작된 여군은 2010.말 기준 7,000여명에 이르고, 2020년까지 11,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임에도 여군의 군복무 상황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기혼여군의 모성 문제나 여군에 대한 군내 성폭력 등이 간헐적으로 언론에 알려지는 현실
- 이에 여군의 임신, 출산, 수유 등의 모성권, 가족동거권, 자녀양육권, 진급, 보직배치, 교육훈련 등에서의 평등권, 성희롱 예방·구제, 여성 편의시설 설치 등 여군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적절한 정책 개선 방안 등 모색

- 국방부 등 관계기관 업무 협의
 - 여군 근무지에 대한 접근, 기존 인권관련제도 자료 제출 등 실태조사 관련 협조 사항 등 협의
- 여군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여군 관련 정책·제도 등에 대한 외국의 선진사례 및 모범사례 조사, 소개
- 여군 인권보호 정책(안) 개발
 - 모성권, 가족동거권, 자녀양육권 개선 및 보장 방안 개발
 - 성차별 시정 및 개선 방안 개발
 - 성희롱 예방 및 구제 방안 개발
- 여군인권보호정책(안)에 대한 검토
 -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

□ 군 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 군 사기진작과 군기유지 가능한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군 부적응자에 대한 실제적인 현상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
- 군복무 부적응자 개인의 인권뿐 아니라 부적응의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도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징병검사 단계부터 전역단계까지의 군복무 부적응자의 트라우마,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정책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에 대한 분석·연구 및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 군 부적응자 실태 현황 조사 및 분석
- 징병검사, 군대내 훈련소, 자대배치, 복무부적응 식별 및 캠프입소, 현역 복무부적합심사 대기 등 단계별 현황 및 대응체계
- 외국의 군 부적응자 관리 사례를 수집, 우리군의 현황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 연구
- 군대내 부적응자 관리 정책개선 방향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언

5.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

□ 인권친화적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기반 구축

- 입법예고기간 내 법령을 검토하고, 인권친화적 법령의 모니터링 기능을 체계화하여 법제개선 검토의 총괄적 기능
- 위원회의 사법개입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헌재·법조단체 등과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 의견 제출을 위한 방법론의 개발

- 법령, 정책 검토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화
 - 부처별 모니터링을 체계화하여 입법예고기간이 40일내 위원회 상정이 가능한 구조로 검토방식의 개선 필요
 - 부처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내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인(대학생 등)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이용하는 방법 강구
 - 법령관련 검토시의 검토기준, 국제적 기준 등 내부 역량 강화

- 법원, 헌재에 대한 의견 제출 활성화
 - 법원, 헌재, 변협, 민변, 학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와 의견제출 과제선정을 위한 간담회 실시
 - 법원 헌재의 인권 관련 사건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내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인(대학생 등)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이용하는 방법 강구(법령모니터링과 동일)
 - 위원회의 사법개입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헌재·법조단체 등과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 의견 제출을 위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

□ 인권NAP 권고에 따른 모니터링 및 정책협의 강화

- 인권NAP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 위원회 권고 이후 정부(법무부) 계획안 권고 이행여부 확인 등
- 관련 부처와 정책협의 강화

- 인권NAP 분석 및 평가
-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 관련 부처와 협의
- 평가집 제작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개선 및 확산(조례표준안보급 등)

- 지역사회 차원의 국제인권기준의 실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인 지역사회 인권증진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규정할 법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인권조례표준안 마련을 위하여 2011년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 연구용역 수행결과에 따른 인권조례표준안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인권조례 제정의 동기를 부여하고, 조례제정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인권조례 표준안 확정
- 책자 발간 및 배포,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표준안 보급에 따른 조례제정상황 모니터링, 표준안 보완 및 지원과제 발굴

6. 인권지수 개발

□ 영역별, 분야별 인권지표 방향 설정 및 개발추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공공부문) 실태조사에 이어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국가인권지수개발 |
|--|
- 분야별, 대상별 구체적 지수 및 지표 개발
 - 국가인권지수 개발
 -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정부부처와 국가인권지수 지표 관련 의견 수렴

II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1. 다문화 사회 이주민 인권 증진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행 모니터링

- 2011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의 이행은 완성도 높은 다문화사회로의 행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정부의 이주민, 외국인에 대한 각종 제도, 정책, 법령 등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이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장 및 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이주인권에 관심 있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구성
 - 현장 및 정책 모니터링 실시(아동 TV 프로그램 모니터링 포함) 및 모니터링 결과물 자료집 발간
-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분기별 이주 관련 정책, 법령, 제도, 국민 인식, 정규 교육 과정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 연도 말에는 그 해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한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이행 실태를 분석하여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이행 실태 보고서(가칭)'을 발간, 토론회 등 개최
- 미이행된 사항이나 새롭게 발굴된 이슈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개선 추진 및 정책 권고 검토, 차기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수립에 반영

□ 이주인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 교류협력 강화

- 지역사회와의 이주인권 공감대 형성 및 이주인권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위원회가 추진한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고 이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이주인권 의제 발굴에 현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 지역별 이주인권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3개(부산, 광주, 대구)지역 및 기타 지역(충청·대전권, 강원권, 제주권)
 -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설명 및 보완 사항 논의
- 이주민 지원단체와의 간담회
- 이주 당사자의 정책 참여 독려

□ 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이행 강화

-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계기로 한국의 인종차별 및 이주민 인권의 현실을 점검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작업 전개(위원회는 2011. 2. 14. 정부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이와 함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견해 및 국제 인권기준이 우리의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 인권 향상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정부보고서에 위원회 의견 반영여부 검토
- 심의에 앞서 국내 관계자들과의 협의, 토론을 통해 협약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내적 이행을 촉진
-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 인종차별위원회 최종견해 이행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
 -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우리 인종 및 이주 관련 현 주소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
- 타 국가 정부보고서 심의 모니터링을 통한 우리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참고 및 대응 강화

□ 국내 체류 이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원 체계 개선

- 외국인의 국내 체류유형이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국제결혼 이민자, 난민,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가족 포함)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미비점과 그 원인 등을 파악하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상호주의와 국제조약과 비교·분석하여 이주결혼 가정, 외국인근로자, 난민인정자(인도적 체류허가자 포함)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국제인권규범을 원칙으로 하여 이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원하기 위한 범위 등 국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파악
 - 외국의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여 향후 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적용 가능성 중심의 개선방안 마련
- 다문화 2세 등을 포함하여 이주 가정이 향후 잠재적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구체적 지원방안 모색
-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정지원법 등 관련 법령의 검토
-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등) 영역에서의 정책 개선 사항 검토 및 정책 권고 추진

□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2011년 8월 현재 E-9비자(외국인등의 고용허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4,845명이고, E-10비자(선원법 적용 대상)를 받고 선원으로 종사하는 외국인은 8,966명임. 그리고 E-10비자 자격 선원 중 약31%인 2,767명이 미등록 외국인임.
- 어업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노동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어업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 어업 이주노동자 관련 법, 제도, 정책 검토
-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정책사례 검토
-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 마련

□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보호 강화

○ 2012년도는 그동안의 위원회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인권친화적인 외국인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보호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단속과정 및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 및 현황 등 조사
- 피보호자 입소 및 검사(신체, 소지품 등) 절차
- 피보호자에 대한 징벌과 강제력 행사 현황(보호 장비 종류, 요건 등)
- 피보호자 외부통신권(서신, 전화, 면회 등) 보장 현황
- 피보호자 건강권(의료처우, 운동, 음식 등) 보장 현황
- 피보호자 문화권(종교, 언어 지원 등) 보장 현황
- 피보호자 권리구제 절차 및 구비요건 현황
- 보호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
- 난민신청자에 대한 업무 처리 과정 및 처우 현황
- 여성, 아동 등 특수 피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구비 및 시행 현황
- 인권친화적 보호시설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권고안 제시

□ 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우리나라는 1992. 12.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93. 3. 3. 국내발효)」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93. 3. 3. 국내발효)」에 가입하였음

○ 국제심포지엄을 통하여 각 국의 난민인정절차, 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고양 방안을 모색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난민과 외국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각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2010년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노력이 있었음

- 각국의 난민 정책에 대한 분석
- 각국의 난민 인정 절차 소개
- 각국의 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소개
- 난민에 대한 각국의 사회 경제적 지원 체계 분석
- 한국 사회의 난민 정책에 대한 제안사항 리서치
- 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2. 노인 인권 향상

□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원 제도의 미흡으로 취약한 처지에 놓인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35만명7천명으로 총인구 11% 해당,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2010 한국의 사회권 지표)
- 따라서 노인의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등의 인권 보장을 통하여 노인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함

- 노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노인인권 상황 모니터링
- 노인인권 정책 토론회 개최
 - 주거권, 노동권, 건강권, 사회참여권 등의 주제로 2달에 1번씩 토론회를 개최
 - 노인인권 개선에 시급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정책권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노인인권 사항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 생계를 위하여 노동을 하는 노인이 늘어가는 반면 갈수록 노인들의 일자리는 비정규직화, 단순노무직화 되어 가고 있고 근로조건으로 보았을 때 60세 이상은 월 평균 205.8시간을 일하는 등 25~34세의 월 평균 189.3시간에 비해서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저임금에 놓여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노인이 집중적으로 취업한 분야의 노동권과 인권 전반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노인 집중취업분야에서 근로조건, 임금 등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인의 인권 상황을 진단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노인 집중취업분야 현황 파악 및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노인 근로자의 노동권과 종합적인 인권 상황 조사
-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정책사례 분석
- 노인 노동권 및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검토

3. 아동·청소년 인권향상

□ 아동인권 보장 기반 구축 및 아동인권 개선

- 우리사회에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라기보다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입양허가제 및 아동의 상소권 조항 유보 철회, 아동의 견해존중 관련 법률 개정,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차별 금지,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입양 정책 개선 및 청소년미혼모 지원 조치 마련 등을 권고하였는 바(2011. 10.),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시설 아동이나 방임된 아동의 교육권 등 아동인권 개선 방안 검토, 아동의 교육권 증진 방안 모색
- 아동의 견해존중 및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검토
- 학생운동선수 아동인권과 같이 위원회가 권고하였으나 그 이행이 미흡한 사안이나 연예오락산업 참여 아동인권과 같이 새로이 제기된 아동인권 과제 관련 법령·정책 검토
- 아동인권 관련 중요 재판에 대한 의견제출 및 현안 이슈 대응

4.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 신규 조사대상에 포함된 아동복지시설 기획조사(방문조사 포함)

- 아동 그룹홈과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등 새로운 형태의 다수인복지시설이 도입되면서 이들 새로운 조사대상(아동그룹홈)에 대한 기획조사(서면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등) 및 일부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함.
- 서면조사 및 아동그룹홈의 인권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신규 조사대상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그룹홈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서면 조사 및 소관 부처 기관 협의
- 방문조사
 - 그룹 홈은 최대 7명까지만 입소 가능하므로 매우 소규모임. 따라서 일정 지역(서울/경기 등)을 선정하여 무작위로 10여개소의 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함.
 - ※ 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시설과 협의하여 방문조사 형태의 실태조사 실시

□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의 강화는 정신장애인의 동등한 참여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임.
- 이에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배포하여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정신보건시설 조사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일관되고 신속한 조사를 도모하고자 함.
-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예방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예방가이드라인 개발 및 의견수렴
- 정신보건시설 가이드라인 공표 및 배포

□ 정신요양시설 실태파악 등을 위한 방문조사

-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기능저하, 보호자들의 방치 등으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고 정신의료 기관과 달리 관련 권리구제절차에의 접근과 인식이 어려울 수 있음.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에 의한 진정제기는 거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시설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 체계 등에서의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지원체계 개선 등을 위한 단계적 조사가 요구됨

- 전국 정신요양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한 샘플링(5~10개) 조사 실시
- 조사 시설 중심으로 관련 국가 및 지방 기관의 지원체계 검토
- 전국적인 실태조사 확대 필요성 평가 등

□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집중 진단개선

-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진정사건 조사와 교육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일정 수준 환자에 대한 권리보호 체계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진정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따라서 진정이 반복되거나 신설 기관 등에 대해 사건조사와 별개로 적극적 방문을 통한 집중 분석과 진단(인권 컨설팅)으로 환자 인권보호, 침해예방 조치를 강화함.

- 정신의료기관 관련된 위원회 결정사례 분석과 교육 자료화
 - 정신의료기관 진단과 예방,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함.
- 관련 조사관, 전문가, 관련 기관 등으로 필요시 방문단 구성
- 방문조사 또는 업무협의 등을 통해 시설 진단과 교육 실시

Ⅲ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1. 기획조사 확대

□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등 기획조사

- 2011. 9.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의뢰 결정하는 등 지속적인 경찰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생
- 개별진정사건 조사만으로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기획조사를 통해 그 원인이 되는 관행, 정책, 법, 제도, 의식, 환경 등 개선을 통한 효과 극대화

- 관련 규정 및 제도, 관행 등 운영실태 파악
-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기획조사
 - 조사팀 구성, 현장 실지조사(피해자, 참고인, 가해자 등) 보장조사

□ 경찰 광역유치장 관련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문조사

-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3~4개 유치장을 통합 운영하는 광역유치장제가 도입됨에 따라, 유치장 보호관의 피의자 호송 및 유치 관련 권리업무가 집중되고 시설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외국인·여성전용거실규정이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유치장 처우와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시설에 대한 환경점검 등 방문조사의 필요성 제기
- 특히, 이번 방문조사에서는 경찰유치관리팀의 업무 관할하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조사가 되지 못했던 기소 전 피의자를 검찰에서 조사하기 위해 대기시키는 장소인 경찰보호관실(구 구치감)에 대한 실태점검을 포함 시킴으로써 그 결과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함

- 인권침해 발생가능성 조사
 -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알몸신체검사, 과도한 장구 사용 등)

- 사생활비밀 침해 여부(CCTV 등)
- 변호인 접견권, 면회보장 여부
- 의료진료권 보호 여부
- 인권위 진정권 보호 여부 등
- 수용자 시설환경 및 처우
 - 수용시설 법정면적 대비 현 실태
 - 식사 제공현황, 화장실, 세면실 사용 등

□ 군대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 해병대 총기사망사건 및 전·의경 폭행, 가혹행위 등 군대 및 전의경 부대내 가혹행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함
- 군대내 또는 전·의경 폭행·가혹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을 위한 기획조사 필요

- 군대내 또는 전·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 등 기획조사(필요시 확대여부 검토)
 - 조사팀 구성, 현장 실지조사(피해자, 참고인, 가해자 등) 및 보강조사
- 상시적인 모니터링(진정사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안 발생 시 즉시 조사팀을 구성하여 기획조사 실시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획조사

- 학교 폭력 중 집단 따돌림(속칭 왕따)은 특히 초·중등학교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단순 폭력과 달리 극심한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 장애에 이르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함. 이러한 심리적 충격에 대해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양산 우려
- 따라서 학교 폭력(특히 집단 따돌림을 수반하는) 사건과 관련한 학교 및 교사에 의한 2차 인권침해 유형을 분석, 학교 및 교사의 대처능력 제고 및 효율적인 조사기법 개발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

- 진정사건 조사 및 조사 기법 개발
- 학교폭력 상담사례 분석(2개월 단기 연구용역)

- 공개 토론회 개최(2회)
- <학교폭력 조사·판단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칭)> 제정 및 권고

□ 소년 보호처분 시설 기획조사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처분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당사자들의 진정 제기가 매우 어려움
- 미성년 수용자라는 특수한 상황의 소년원 수용 아동에 대한 보호 양태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 조사관에 의한 서면 및 현장조사
 - 「소년법」 제32호 제6에 따른 '감호위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 방문조사
 - 소년 구금·보호시설 4개소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 소년원 1개소, 소년분류심사원 1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 기타 소년보호시설 1개소
 - 10명 내외의 조사단 구성(외부 전문가 3~5인, 사무처 관련 부서 담당자 2~3인 및 침해조사과 조사관 2~3인 등)

□ 구금시설 내 보호장비 및 징벌 남용 여부에 대한 방문조사

- 위원회 10년 활동의 성과로 구금시설 내 수용자 인권상황은 매우 개선된 것이 사실이긴 하나, 보호장비 사용이나 징벌에 대한 진정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보호장비와 징벌의 남용여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함.

- 전국 3개 구금시설을 임의로 선정하여 방문조사 실시
- 10명 내외의 조사단 구성(외부 전문가 3-5인, 사무처 관련 부서 담당자 2-3인 및 침해조사과 조사관2-3인 등)

□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기획조사를 통해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시 학벌 차별, HIV 감염인, 여성인권 향상, 성 소수자 등, 언론보도 모니터링 과정에서 과제 발굴
- 일상생활의 차별 현안 및 시정 과제 발굴
 -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 등과 연계, 일상생활 속 연령차별 사례를 발굴하여 진정사건 접수 및 직권조사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 ※ 인권정책과 및 3개 지역 인권사무소 연계 협의
- 발굴 과제에 대한 기획조사 수행 및 홍보

□ 장애인 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기획조사 강화

- 영화 '도가니'와 관련하여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심과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언론모니터링 및 인권단체와 시설 종사자 등의 제보·민원에 대한 적극적 기초조사 실시. 필요시 시설 방문조사 또는 직권조사 추진
- 언론, 단체, 제보, 민원 등 현안사항 기초조사
- 기초조사 토대로 필요시 방문·직권조사 추진

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 진정사건의 효율적 처리 개선 방안

- 조사관의 감소, 진정사건의 증가로 인한 장기미결사건 누적 현상 해소, 처리절차의 개선과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구제 기능의 강화, 진정인 등의 만족도 제고
- 조사구제규칙 등 조사관련 규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연구·분석하여 개선하고, 특히 장기미결사건 증가에 따른 처리 개선 방안 마련

- 조사구제규칙, 운영규칙 등 조사관련 규정 분석
- 진정사건의 증가로 인한 장기미결사건 분석
- 장기미결사건 처리 개선 방안 마련

□ ADR 제도의 정착 및 운영

- ADR 모델 확산이라는 대외적 환경에 대응하고 인권친화적 ADR 모델의 확립을 통해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권리구제 도모
- 인권친화적 ADR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인권기구의 ADR 기능과 역할에 대한 최신 지식과 정보 분석 및 관련 해외 기구들과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 위원회 권리구제 효율화에 대한 외부의 문제제기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권리구제 효과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의 효과성 분석 및 이에 기반한 ADR 제도 정착을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

- 위원회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현황 분석
- 해외 선진 ADR 제도 및 운영사례 수집 및 분석
- 인권친화적 ADR 모델의 연구,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 및 안내, 조정과 관리 체계 연구
- 조사관 대상 ADR 전문가 양성체계 연구
- 전문 평가단 운영

□ 차별행위 조사절차 및 기법 연구·개선

- 위원회법은 성희롱을 포함하여 20개의 차별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대표적 차별 사유별로 특화된 조사절차와 기법 정비 및 판단논리 개발 필요
- 이에 차별사건의 사유와 유형별로 보다 정교한 조사절차 및 기법, 판단논리의 연구·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 및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차별사유 및 유형별 사건 특성 분석
- 차별사유 및 유형별 조사절차 및 기법 연구
- 차별관련 판례 및 학계 연구동향 분석 및 결과 발표
- 매뉴얼 발간

□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효과적 관리

- 10년간 축적된 차별 사건의 결정례 및 판단논리를 사건처리에 반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종전 사건의 데이터를 분류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진정처리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정비
- 위원회 설립 이후 성희롱 피해구제 업무의 이관,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등 차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
- 차별 관련 진정사건의 추이 및 관련 통계에 대한 양적, 질적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 필요

- 차별 진정 사건의 분류항목 검토 및 진정처리시스템 반영
- 연령차별 사건의 연령차별금지법 관련 통계 분류항목 정비 및 진정처리 시스템 반영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의 체계화, 매뉴얼 개발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의 체계화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
-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을 발간하여 조사관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진정 사건조사의 효율성을 높임.

- 대안적 권리구제 활성화
- 조사매뉴얼 발간
- 진정사건 분석을 통한 제도, 관행의 개선

3. 인권상담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전화상담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반면, 상담인력의 부족 및 전화상담 시스템의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만 제기가 잇따라 위원회의 대외 이미지 및 고객 만족도는 향상되지 않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능한 전문상담원 충원과 더불어, 상담 운영체계의 개선, 전화시스템 교체를 통한 기능 강화로 대국민 인권상담 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

- 유능한 전문상담인력 신규 4명 증원에 따른 인력선발 및 체계적인 전문교육훈련 실시
- 새로운 상담환경에 부응하는 전문상담인력의 근무형태·평가방식 및 관리체계 확립 등 운영체계 혁신
- 전화상담의 기능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현행 상담전화시스템 전면 교체

□ 상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담역량 강화

- 위원회 관문으로서 인권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역량을 강화하여 상담 만족도 및 권리구제 효과성 제고
-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 상담·민원인의 다양한 욕구 분출 등에 따른 효율적 상담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담역량 습득은 필수적임. 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전문교육훈련 실시가 요청됨

- 상담원의 상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역량 교육프로그램' 실시(상·하반기)
- 전문상담 종사자에 대한 '소진방지 프로그램' 실시(상·하반기)
- 인권이슈 상담을 통한 실제 '상담사례 연구토론회' 개최(월 1회 이상)
- 인권상담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상담위원 '상담 표준매뉴얼' 작성 활용

- 전문상담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상담 네트워크 구축 운영'(분기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기관 및 NGO 등과 다각적인 상담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인권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인권상담 활성화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인권취약계층(지역)의 위원회 접근기회 확대
 -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상담활동을 통한 대국민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생활 속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인권상담 취약지역 및 계층의 다변화
 - 어촌·농촌지역의 이주노동자, 지역아동센터, 쪽방촌, 난민, 장애, 노인, 북한 이탈주민, 도서·벽지의 지역주민 등
 - 도서·벽지 등 인권 취약지역, 인권이슈별 순회상담 추진방식의 차별화
 - 상담대상의 특성에 적합하게 소규모별 방문 등 다양하게 편성 운영
 - ※ 실제 순회상담 실시 시기, 상담대상 및 지역 등은 순회상담 실시 전 사전조사 후 탄력적으로 조정, 실시할 계획임.

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인권사무소>

□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인권의제의 발굴·운영

- 지방의원 인권리더십 과정 운영, 지역인권활동가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인권조례 표준안 보급을 위한 토론회, 사례발표회, 보고회 등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업무 과제 전문가 세미나 등 개최
- 인권전시관, 인권테마역사, 리빙라이브러리 등 운영

□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협력 및 홍보 강화

- 언론사 기자와의 간담회
-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 인권작품공모전(UCC, 영상, 사진 등)

□ 지역주민과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상담 및 구제활동 강화

- 인권순회상담 및 파견상담 실시
- 인권상담네트워크 운영
- 인권취약지역 모니터링, 진정함 점검

□ 위원회 전략과제의 지역적 실현(장애, 이주, 노인 등)

- 다문화 분야 인권교육
- 다문화사회 청소년 대상 인문학 캠프
- 이주아동의 건강권 워크숍
-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인권교육 법제화 및 국내외 협력 촉진

- 유엔의 인권교육훈련선언 및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에 따라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적 이행방안 및 국제적 협력방안 모색
-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10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향후 10년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동계획 수립
- 인권교육 법제화 및 유엔의 인권교육훈련선언 이행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경찰청 등과의 MOU 체결 및 이행 촉진
- 인권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인권과목 개설 확대
- 유엔의 인권교육훈련선언 및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14) 실행을 위한 국제동향 모니터링 및 홍보 추진
-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수립(확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학교 인권교육의 제도화

- 교육과정 및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의 인권교육 개선을 촉진하고, 인권교육 실행거점으로서의 인권교육 연구중심대학(10개)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학교 인권교육의 제도화 기반 조성
-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교내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교사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모색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 2011년 ‘학교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라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체계화와 계열성 확보, 교과서 개정 과정에서의 반인권적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과정 등 개선
- 학교인권교육의 목표, 방법, 내용에 대한 가이드 제시로 학교인권교육의 내실화 추진
- 인권과목 개설, 학교간의 인권정보 교류 등 대학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 모색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인권교육 도입에 관한 간담회 개최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 최근 차별금지, 두발강제 단속, 휴대폰 소지검사 등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심지어는 주관부처와 지역교육청간에도 큰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학생간 폭력, 괴롭힘(왕따)에 의한 자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됨
- 학생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이러한 갈등구조의 지속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며, 구성원간의 교육발전과 사회통합에도 악영향을 줌
-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필요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TF 구성·운영
 - ※ 2011. 12. 28.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기획단’ 출범(내외부 위원 11명)
- 일선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공식·비공식 의견 수렴
 - ※ 인터넷 토론방 개설 등 각계 의견 수렴
- 해외 선진사례 수집
- 학생인권조례 시행 평가
- 가칭“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개최
 - 차별 대안 프로그램 등 제시 및 방송토론회 등 개최

-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되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권고(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 교육청)

2.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종사자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

- 이주민, 노인, 경제적 약자, 장애, 정신장애 등 분야의 시설 종사자 및 당사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통한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
- 찾아가는 인권특강 등을 통한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 다문화분야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 장애·정신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 정보인권·노인분야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 기업·언론·경제적 약자·스포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 인권교육의 내실화 방안 마련
 - 강사 선정 및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 개선 방안 강구
- 인권특강 운영 및 지원

□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에 따라 법 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로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

-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인권리더십 과정
-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인권실무 과정
- 학교 관리자 리더십 과정
-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기존 연수과정을 활용

□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 군대·경찰 등 법집행분야, 장애, 아동·청소년, 이주민 등 인권교육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인권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강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한 유엔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교육 전문 인력 양성

- 법집행분야 강사양성 과정
- 장애·정신장애분야 강사양성 과정
- 다문화분야 인권강사양성 과정
- 경제적 약자·아동·청소년분야 인권강사양성 과정
- 학교·스포츠·정보인권분야 인권강사양성 과정

□ 군인 대상 인권교육 강화

- 최근 전·의경 폭행·자살사건(2011.3.), 해병대 총기사고(2011.7.) 등으로 그릇된 병영문화 사회적 이슈로 재 부각
 - 군인 및 전·의경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기반한 상호존중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병영생활 내 인권침해 등 사고예방
- 유엔의 인권교육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표준화된 인권교육을 위해 군대분야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 육·해·공군 및 전·의경 강사양성과정 운영(4박5일, 3회, 150명)
 - 육군(100명), 해·공군(40명), 전·의경(10명)

3. 인권 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사건 이후 법집행분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조
 - 법집행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표준화를 통해 인권교육 전문 강사 및 위원회 직원의 강의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강사용 표준교안' 및 사이버교육콘텐츠 개발
- 다문화사회의 진입 및 사회구조의 고도화 등에 따라 기 개발된 성차별, 장애차별 예방을 위한 사이버 교육자료 외에 인종, 나이, 지역, 가족형태, 사회적 신분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예방을 위한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법집행분야(군대, 검찰, 교정 등) 인권교육 표준교안(3종)
- 차별분야, 경찰분야 등 사이버교육 콘텐츠(2종)
- 다문화인권교육지침 개발(1종)

□ 온라인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권교육 접근성 강화

- 온라인을 이용한 사이버 인권교육의 확대 운영으로 인권교육 접근성 및 효과성 제고
- 사이버교육과정 활성화를 통해 증가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등 안정적 교육 운영 및 신규 교육수요 창출

- 사이버교육과정 운영(9개 과정)
 - 인권의 이해, 인권의 이해(심화), 성차별 예방, 장애차별 예방, 장애차별 예방(심화), 행정과 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선생님을 위한 인권+
- 스마트 폰을 활용한 인권교육 콘텐츠 보급
- ON-OFF라인 혼합교육 도입 확대(강사양성과정)
- 교육관리시스템(LMS) 개선을 통한 교육 운영 안정

□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전문 잡지 발간

-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 잡지를 발간·보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인권취약계층의 자기역량 강화(empowerment)
- 인권 잡지를 통해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사회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

- 연간 발간 계획 수립
 - 국내외 인권 현안과 위원회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한 연간 기획 마련
 - 정기구독자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한 디자인 등 개선 모색
- 격월간 「인권」 잡지 발간
 - 연간 총 6회, 매호 24,000부 발행
 - 읽기 쉽고 보기 쉬운 인권전문 잡지 기획을 통한 우리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
 - 사회적 주요 이슈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웹진 「인권」 온라인 서비스
 - 「인권」 잡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위원회 발간 매체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웹 디자인 개선, 전자책 서비스 등을 통해 온라인 독자층 확산
- 시각장애인 이용 서비스
 - 시각장애인용 목·점자 도서발간, 점자도서관 등 배포(연 1회)
 - 「인권」 잡지 음성전환 바코드 입력, 웹진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강화
- 시민기자단 운영
 - 청소년, 주부,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으로 시민기자단을 선발, 운영하여 잡지 운영의 내실화 도모
 - 모니터링, 기고와 홍보 활동 등을 통한 일상 속 인권문제 반영
 - 「인권」 잡지와 온라인 홍보 연계 등 다각적 활동 추진

□ 인권영화 제작과 보급

- 대중적 친밀도와 영향력이 있는 매체인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특히 차별예방을 위한 '인권영화 프로젝트' 추진
 - 차별문제는 오랜 기간 내면화되어 왔을 뿐 아니라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대국민 의식을 변화 지속 추진 필요
 - 우리 사회 내 '차별' 주제가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새롭고 다양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 필요
- 인권영화의 극장개봉 이후 비디오 및 DVD 출시, TV 및 케이블방송 방영, 모바일 상영, 인터넷 상영, 국내외 영화제 상영 등 보급 지속 추진하고, 학교·공공부문, 시민사회단체 등 인권교육 교재로 활용 모색

- 인권 영화 등 콘텐츠 개발
 - 기존 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추진
 - 중장기 발전방안과 2012년 위원회 중점과제와 연계한 영화 주제(차별예방, 노인인권, 정신장애인, 군 인권 등) 선정 : 내·외부 의견수렴, 감독선정 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한 주제 확정 예정
 - 다만, 기 확보된 저예산으로는 장편영화 제작이 불가, 단편 유니버스로 제작 방식을 전환 등 검토
-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을 담은 인권영화 「범죄소년」 극장 개봉과 보급
 - 특별시사회, 언론시사회 등 개최, 영화제 출품 등

□ 인권작품 공모사업

-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인권 관련 이슈를 국민들이 직접 다양한 매체와 기법으로 표현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의식을 고양
- 입상한 작품들을 인권교육·홍보콘텐츠로 활용하여 사회 저변의 인권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

- 공모 아이템 선정과 공모 분야별 홍보·접수·심사·활용 기본계획 수립
 - 공모부분, 실무 분담(인권사무소 참여 여부) 등 개선 방안 마련

- 교육기관, 인권단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On-Off Line 홍보실시
- 공모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준에 의해 우수작품 선발
- 전시회 및 공모전 사이트 업로드를 통해 입상한 작품 널리 활용

1. 장애인 차별시정 강화

□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 장애유형의 다양성, 새로운 인권적 요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장애 관련 정책은 여전히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수립되어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미흡함. 우리 위원회 역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 없이 사회적 의제에 임시방편으로 대응함으로써, 정부 부처의 노력을 견인하지 못하고 단편적·파편적인 대응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종합적·체계적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중장기 사업 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Action Plan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등 주요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분석 연동 시스템 개발
- 장애인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 장애차별 영역별·유형별 중장기 개선 계획과 연차별 행동 계획 수립

□ 장애인자립생활 기반 구축

-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법률 제·개정, 활동보조인 제도화,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선,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환센터 운영 등은 점차 자립생활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정책수립은 부재한 상태임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시설의 인권상황 및 실태, 장애유형별·생활형태별 자립생활의 욕구, 현행자립생활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 장애 당사자의 사회참여 등 당사자의 관점에서 전국적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보고서 마련

- 추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구성
- 전국적 실태조사 실시
-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 이해관계자 릴레이 미팅 및 정책 간담회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대국민 인식 및 동 법 적용대상 기관의 인식 부족 등으로 장애인 차별 개선 미흡
- 따라서 동 법을 모니터링하여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현장 시정 또는 정책적 개선방안 검토 등으로 장애인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권보호 및 기반 구축
- 한편,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되고,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편차가 심한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례 분석을 통해 장애인 인권 조례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 7개 지역 모니터링단 구성
 - 서울, 대전, 강원, 부산, 광주, 대구, 제주 7개 지역 모니터링단 구성
 - 부산, 광주(광주, 제주), 대구 인권사무소에서 각 지역 모니터링단 운영
-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장애학생 교육권 모니터링
 -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 모니터링
- 정책 모니터링 실시
 - 각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인권관련 조례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장애인인권조례 가이드라인(가칭) 마련
- 모니터링 결과물 자료집 발간 및 결과보고회 개최
-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필요시 정책권고

□ 장애차별 보험 가이드라인 작성 및 권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가입 거절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도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에 대해 개선 권고한 사례가 많이 있으나, 개별사건에 해당할 뿐 구체적이지 못해 보험차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차별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므로 보험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권고하고 공표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 관련 부처 협의
- 보험 가이드라인 발표
- 관련 기관 배포

□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 기준 연구

- 현재 위원회에 진정되는 장애 관련 사건의 대부분은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장애차별을 시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음.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상황에 따라 차별행위 해당 여부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음.
- 따라서 해석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별예방 및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정당한 편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편의제공 판단 기준 연구
 - 2010년 수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총칙, 고용 부분에 이어 교육, 재화 이용, 사법행정절차 등에서의 편의제공 기준 연구 지속 수행
- 정보접근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정책 권고
 - 장애인 정보접근권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정책 권고

- 인적서비스 관련 리플릿 작성 및 배포
 - 장애인의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적서비스 기준 관련 리플릿 작성 및 관련 기관 배포
 - 장애인 생활영역 중 자립생활을 위한 정당한 편의 연구 및 대안 마련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사법·행정절차 이용을 위한 인적서비스 기준, 정보접근 관련 법제도 검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2013년도에는 2015년까지 편의제공이 완료되어야 하는 미술관,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한 편의제공 법리 및 판단기준 마련이 우선 필요함

□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정신장애인을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시켜 사회 통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망설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응을 저해하고, 이는 편견과 선입견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 이에,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편견에 대한 환기 및 홍보 추진.

- 정신 장애인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실태조사
 -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언론보도 모니터링
- 실태조사 문제점 분석을 통한 사회적 환기 및 홍보

□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에 즈음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진행 방향 제시
- 추진방향
 - 토론회를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 성과평가 및 향후 진행방향을 제시하되, 결정사례 중심으로 토론 실시

- 수도권 및 지방등 7개 지역별 분산 실시
- 수도권 및 강원, 대전지역은 본부에서 실시하고, 부산, 대구, 광주(제주 포함)지역은 지역사무소에서 실시
- 토론회 개최시기: 2012. 4월
- 참석: 장애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등 참여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캠페인 실시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캠페인 개최를 통해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편견 해소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관련 부처, 전문가 및 정신장애 당사자와 공동으로 세계정신건강의 날 (10.10)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 및 개선방향 공유
 -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 실시
 - 광역 및 지역 정신보건센터, 대한정신건강재단 등과 공동으로 캠페인 실시

2. 성차별 시정 강화

□ 여성감정노동자 인권개선(계속)

- 전체 여성 취업자 약 1,000만 명 중 30% 이상이 서비스분야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함에도 여성 감정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 불안정 상황에서 사회적 인식에서도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위원회가 2011년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개선 사업을 추진함.
 - 2011년 여성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현실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 대상 캠페인 등으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한 성과를 2012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관련 법제 개선 등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정책적 검토로 연계하고자 함.

-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수첩 등 제작 및 지역 별 배포
 - 고객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대처, 권리구제기관 이용 등을 담아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수첩' 등 제작
 - 위원회 인권사무소와 공동으로 지역 별로 관련단체, 노동조합, 사업주협회 등을 파악하여 사업 진행
- 여성 감정노동자 근무환경 관련 법제 개선 간담회 및 정책 검토
 - 고객의 괴롭힘, 모욕 등에 대한 대처방안 관련 법제 개선 추진

□ 가출청소년(여성) 인권보호 사업

-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가정에서 이탈한 청소년이 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의 경우 생계, 주거 등을 이유로 성매매 등 범죄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
- 이에 가출여성청소년이 가출 이후 겪는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여, 가출 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가출청소년(여성)의 인권상황 등 모니터링
 - 가정 이탈 후 겪는 폭력, 성매매 등 범죄 피해, 주거, 학습, 건강 등 인권 침해 현황 모니터링
 - 가출 청소년 보호 및 구제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제도 등에 대한 검토 및 외국사례 조사
 - ※ 2012년에는 전문가 등과 함께 기초 실태 파악과 후속과제 발굴에 주력하고 2013년, 2014년에 사안별 구제방안 마련 및 정책 권고 등 추진

3.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개선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획사업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령차별금지법 시행효과를 점검하고 위원회법 상 권리구제 절차와 병행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
 - 특히 공공부문에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청사관리 용역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연령차별 개선 도모
-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시설관리 용역의 연령차별, 임금차별 등 실태 조사 및 정책검토
 - 청사관리용역 발주 시 연령제한, 최저단가와 임금차별 등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개선안을 마련하고 권고 등 추진
 -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연령차별 개선
 -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현황 및 지원자격 요건, 직무분석, 연령분포 등 실태 파악 및 업무협의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필요시 정책권고)
 - 연령차별 금지제도 시행 효과 점검 토론회 개최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효과의 점검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 개선

- 2011년도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사지원서, 제출서류 면접 등 기업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관행에 대한 개선을 통해 차별 없는 취업 과정 실현 기반 조성
-
-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개선을 위한 실무 가이드 제작
 - 기업체 관계자 등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 의견 수렴
 - 표준입사지원서, 면접질문 시 유의사항, 사유별 차별 사례 정리
 - 기업체에서 채용 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가이드 제작·배포

□ 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 고용차별 개선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청사의 시설관리계약 시 원청인 공공부문이 용역업체 근로자 연령제한, 최저단가와 임금차별 등 실태 파악
- 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업체 근로자의 채용, 임금 등 고용차별과 관련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하여 공공부문 고용차별 시정 계기 마련

- 공공부문 청사 시설관리용역의 연령 제한, 임금차별 등 고용차별 실태조사
 - 청사 관리용역 계약발주 시 연령제한, 최저단가와 임금차별 등 실태조사
- 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 고용차별 개선 정책검토
 - 청사관리용역 발주 시 불합리한 연령제한이나 임금차별 등 고용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개선안 마련하고 권고 등 추진

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개선(실태조사)

- 전국 대학교(4년제)를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상담소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약 17%만이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
- 교직원이 아닌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미흡, 사건발생 시 대처과정에서 상담소의 독립적인 역할 제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학내 분위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전국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태 및 구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

- 대학교 성폭력상담소 등 실지조사, 관계자 설문·면담
- 관련법령 및 기존연구 문헌조사, 외국사례와의 비교조사
-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안 마련
 - ※ 2012년에는 관련 실태 파악과 정책 개선 권고를 추진하고 2013년, 2014년에는 후속사업으로 정책 권고 이행 모니터링,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네트워크

□ 성희롱 사건백서 발간 및 성희롱사건처리시스템 효율화

- 위원회는 2004.~2011. 약 1,000여 건의 성희롱 진정사건을 처리하여 성희롱 조사 구제기관으로서의 사례와 경험이 독보적임
- 그 동안 처리한 성희롱 사건들의 특징과 유형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구제 과정과 처리 결과에서 나타난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개선 방안을 도출·홍보

- 성희롱 사건백서 발간
 - 사건의 유형 별 분석, 성희롱 예방 및 구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 등 수집·종합(※ 성희롱시정권고사례 제5집의 새 버전)
 - 백서 제작 시 위원회의 성희롱 사건 처리와 관련한 상담소 및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 의견 수렴
 - 성희롱 예방 구제기관 협의회와 연계·활용
 - 인권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인권교육과와 협의)
- 성희롱 사건처리시스템 효율화
 - 유형 및 통계산출이 용이하도록 성희롱 사건 DB 정비 및 분석

5.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 종교에 의한 차별개선 기반 구축

- 우리나라는 국교가 인정되지 않는 다종교 사회이나, 종교단체 운영 기관의 직원 채용 시 해당 종교 신자로 자격요건을 제한하거나 채용 후 종교를 강요하는 사례 등이 있고, 2008년도에는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 정보시스템(알고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에 사찰정보가 누락되는 등 정부의 종교차별 문제가 이슈화됨.
- 이에 종교의 유무, 또는 종교의 차이에 따른 차별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평화로운 다종교 사회 실현에 기여

○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

- 각 종단 소유 시설 등의 운영·이용에 있어 종교차별적 규정과 사례 조사
- 정부정책의 종교 차별적 요소 및 사례 조사
- 종교차별의 정의와 판단기준 정립 및 종교차별 시정 정책 제언

○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종교차별 개선 과제 발굴

- 실태조사 결과발표와 토론회 진행 및 종교차별 개선 위한 정책과제 분석

※ 2012년에는 실태조사 연구영역을 통해 종교차별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2013년 이후 사안별 정책권고 등 추진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 북한인권 관련 정책개발 활성화 및 정책방안 모색
-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및 제도적 기반 확립

- 북한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북한이탈 주민 무국적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
 - 탈북자 중 여성이 70% 차지하고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출산과 국내 입국과정에서 자녀와 함께 입국하지 못한 경우 다수
 - 제3국내 체류중인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개발
- 북한인권 자료 개발
 - 북한인권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를 통한 자료 개발
 - 북한인권침해신고 내용, 북한의 인권참상에 대한 국내외 인식 고양을 위한 다큐멘터리, 사진 등 영상 제작
-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및 북한인권포럼 운영
 -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책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및 '북한인권포럼' 운영
 - 북한인권에 대한 각계의 시각차를 줄이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정책개발 추진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 추진
 - 북한인권과 관련된 긴급현안에 대한 권고 등 추진
 -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보호
 - 북한이탈 주민 무국적 아동 인권보호 방안 등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와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에 관한 정책 검토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신고상담 및 조사국에서 이관된 진정사건 정책 과제 검토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북한인권침해 사례집 발간(국, 영문) 및 토론회 개최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진정사건 정책과제 검토
 - 북한인권침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처와 업무협약 강화(하나원, 정부합동신문기관 등)
 - 북한인권 개선 국가 정책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계획 모니터링
 - 관련부처와 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 영역별, 이슈별 전문가 간담회 추진 등

□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조성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상호 공동관심 사항 협의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방안 모색
-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업무공조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권위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여론 조성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

- 국제심포지엄 개최
 - 일정 : 2012년 상반기
 - 주제(안)
 -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제연대 방안
 - 남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
 - 참가대상 : 북한인권 전문가, 국제NGO 단체 등

- 북한이탈주민 인권상황 파악을 위한 해외 현지조사
 - 중국, 몽골 등 탈북자 인권현황 파악 및 현지조사
 - 탈북자 문제 관련 학자, NGO단체, 현지인 의견 수렴
 - 탈북자 인권현황 및 생활실태 파악,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 탈북자를 통해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 파악(매년 주기적으로 실시)

- 북한인권 개선 국제공조
 -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협의
 - 고문과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를 위해 유럽고문 방지위원회, 세계고문방지기구 등과 국제공조 방안 협의
 - 북한이 가입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조약감시기구, UPR 등을 통한 공조 모색
 -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국의 북한인권특별대사 등 초청 정책협의

기획사업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조성

- 기업인권 관련 법·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인권경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인권경영 자가진단도구를 보완한 인권경영 요약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기업의 인권경영을 선도

- 노동법, 상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 기업인권 관련 국내의 모든 법령을 검토하고, 이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사업
- 기업인권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한 기업인권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인권지수 진단을 위한 요약 체크리스트 개발¹⁾

□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국내공감대 형성

-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의 장 마련
- 이해관계자들의 인권경영에 대한 학습효과 제고

-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포럼 구성
- 기업과 인권 주요 이슈(기업과 인권 국내 가이드라인 제정 등) 관한 토론회 개최

1) 덴마크 인권연구소는 인권준수평가(Human Rights Compliance Assessment)라는 1000개의 지표로 된 200여개 이상의 질문들로 구성된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후, 실제로 이를 폭넓게 기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인권준수평가의 요약본인 인권준수평가 퀵체크 (HRCA Quick Check)를 다시 개발함. 지난 2009년 인권위는 인권경영 자가진단도구를 개발하였는데, 400여개가 넘는 진단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기업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이를 100여개 정도로 요약하고 적실성 있는 지표를 첨가하는 등, 실제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인권경영 자가진단도구 수정 및 요약본인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자 함

□ 주요 기업과 MOU 체결을 통한 인권경영 활동 지원

- 제정된 기업과 인권 국내가이드라인 및 인권경영 요약 체크리스트를 보급하여 실제로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적 사업
- 주요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제정된 국내 가이드라인과 인권경영 요약 체크리스트를 시범적으로 실시
-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등 인권경영에 대한 자문 및 교육하도록 함
- 주요기업에 각종 해외자료 제공함

□ 국제협력 활동강화(기업과 인권)

-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국내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
- 국제협력을 통한 인권위 내부의 역량 강화
-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구 활동 적극 참여
- 국제 기준 이행 후속조치 및 모니터링
- 기업과 인권 국제 동향 파악

기획사업 2. 정보인권 증진

□ 정보인권 종합보고서 발행 및 이행 모니터링

-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발간에 따른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사회에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
- 정보인권 관련 국제사회 및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련 중요 안건을 지속적으로 개발함
-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대국민 보고대회
-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요약 영문홍보자료 작성 및 발송
- 정보인권 관련 국내·외 입법 모니터링 및 주요 판례 모니터링 보고

□ 인권친화적 사이버 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문화향유권,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정보접근권 간에 충돌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함.
- 정보인권 관련 사건에 있어서 정보인권에 포함되어 있는 각 권리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권 침해 판단에 있어 학자들의 자문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정보인권 영역간 충돌(정보프라이버시권 Vs.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보인권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실시
- 유관 학회(한국헌법학회, 인터넷법학회, 정보법학회 등)와의 공동학술대회 실시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과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함
 - 국제사회에서 웹 구축시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기술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정보접근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전자서명법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

1. 인원위 독립성 강화

□ 인권의 헌법적 확장 모색

- 국민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헌법상 기본권 강화 방안 마련
- 헌법상 기본권이 국제적 수준에 합치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있으며 국제인권규약 등 선진 규범의 국내이행 필요
- 유럽공동체 및 선진 각국의 기본권 조항에 대한 조사·분석
- 사회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기본권의 개발
- 국제법의 국내법상 효력 강화
 - 국제인권협약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조사 및 대안 마련
- 국가인권기구의 헌법기관화 필요성 및 기능 정립방안 연구
- 외부 전문가 포함 TFT 운영 검토

2. 국내외 협력강화

□ ICC, APF 교류협력 강화 - 다자간 협력

- UN, ICC, APF 등 다자간 회의체를 통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인권의제를 파악하고 선도함으로써 선도적인 인권위원회 그리고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가위상을 강화
-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본연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ICC·APF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인권보호체계와 국내인권 보호체계의 가교 역할 활성화
- UN, ICC, APF 등 인권국제회의 참가
 - UN 인권관련 회의 참석(인권이사회, 각 조약위원회 회의 등)

- ICC 연례회의 등 참석, 우리 위원회 모범사례 발표 등 적극적 역할 견지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실무그룹 회의 등 참석
- ICC 및 APF 활동지원
 - 아태지역 인권보호 활동 지원을 위한 APF 활동 지원(100백만원)

□ 국제인권기구 교류협력 강화 - 양자간 협력

- 국제인권사회에서 모범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내외 인권증진 기여
-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국가인권기구에 인권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서의 리더십과 국가위상 강화

- 국제인권기구 교류 협력
 -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국제적십자사)
 - 외국 국가인권기구 방문(카자흐스탄인권위원회)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
 - 위원회 설립이후 주요 활동 및 성과, 국제 인권현안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 참가인권기구간 경험 공유 및 우리 위원회의 노하우 전파

□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 개최 - 국제회의

-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하는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인식을 제고하고,
- 국제인권에 대한 기여를 통해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회의 명칭 : 제12차 아셈 인권 세미나 - 정보통신기술과 인권(12th Informal ASEM Seminar on Human Rights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Human Rights)

- 주요 의제
 - 프라이버시권 (Rights to Privacy)
 -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 정보 격차 (Digital Divide)
 - 인터넷 상의 정보 향유권 (Right to Cultural Enjoyment on the Internet)
- 기간 : 2012. 6. 26(화) ~ 28(목), 3일간
- 장소 : 미정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주관
 - ASEF (아셈사무처 역할, European Commission 재정지원)
 - 프랑스 외교부
 - 스웨덴 Raoul Wallenberg Institute
- 참가규모 : 약 200명

□ 인권정책개발과정 운영 - 국제인권교육

- 외국의 인권정책수립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지원을 통해 인권분야에 대한 국제 기여를 확대
- 국제인권에 관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통해 위원회 위상 강화 및 성숙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격 제고
 - 위원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경험 소개
 - 인권정책수립, 인권교육, 인권침해조사 구제방안 논의
 -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논의

- 과정 명칭 : 2012 인권정책발전과정(2012 Human Rights Policy Development Program)
- 기간 : 2012. 3. 6(화) ~ 3. 30(목), 25일간
- 장소 : 코이카연수원(입교식과 수료식은 위원회)

- 후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참가규모 : 약 4개국 16명
 -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주요 강의 내용 : 제1강 ~ 제10강
- 주요 기관 방문 :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등

□ 인권정책관관계자 협의회 활성화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전문가, 단체 등과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협의와 소통을 위해 인권정책관관계자협의회를 활성화하고자 함
- 정책권고 이행 또는 주요 인권관련 범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관계자 협의회 실시

□ 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공동 심포지엄

- 위원회 업무 10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 정립
 - 학술연구기관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연구기관과 교류·협력을 제고하고, 인권단체관계자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상호유대를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성과, 그리고 도전과 전망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공동 심포지엄
 - 소주제
 -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정책 및 법제개선 의 성과와 과제
 - 국가인권위, 10년 평가 및 방향제시 등

□ 인권단체 보조금 지원

- 인권단체 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사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인권단체 활동 활성화 기여와 인권정책과제 발굴
- 사회적 소수자 등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인권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증진, 생활 속의 실천 프로그램 개발·보급

- 기본계획 수립·확정
- 지원사업 공모, 우수사업 사례 발표회 개최
 - 인권실천 우수사례 선정을 통한 사업 성과 확산 모색
- 2012년 협력사업 선정과 지원
 - 「보조금사업심사위원회」 사업 심사와 선정
 -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추진
 - 사업 중간평가(서면평가) 및 현지모니터링
 - 사업결과보고서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인권단체공동협력사업 사후 활용 방안 검토(정책과제 발굴, 교육, 홍보 등에 활용)
- 보조금사업 평가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 재검토 및 보완

□ 시민사회와 인권증진 공동 협력

-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논의 활성화, 우리 위원회 인권정책 의제 개발 등에 참여 기회 확대
- 인권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장 활동가 등의 의견 수렴, 생활 속의 인권 상황 점검과 인권정책 개선과제 발굴

- 인권시민단체와 일상적 교류협력
 - 인권시민단체 활동 상시적 모니터링과 위원회 사업과의 연계방안 검토 추진
 - 위원회 전략과제 관련 인권단체 등과 현안 논의를 위한 분야별 간담회 추진
 - 위원회 활동 및 성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워크숍·정책간담회 추진

- 인권현장 방문 추진
 - 인권취약분야 인권상황 점검 및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아울러 생활밀착형 인권개선 과제 발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현장방문 실시 (월 1회)
 - 인권현장방문 후속조치 검토: 기관장 초청 정책간담회 실시 등
-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 인권단체 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위원회 후원 명칭 사용, 행사 참석 등 인권 활동 지원
 - 인권단체 활동 지원(명칭/재정후원 등) 관련 지침 정비

3.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직제령 개정 등 대내·외 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조사업무가 변경되었거나, 신규조사 인력이 발생하여 신규교육 및 재교육이 필요하고, 아울러 경력 조사관들에게는 기본적인 지식 배양
- 조사절차에 대하여 기존 강의식 조사관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조사관 역량 강화 도모
- 경력 조사관들의 축적된 조사역량을 신규조사관들과 공유, 조사과정에서의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 필요시 상시학습 또는 사이버교육 등을 연계하여 조사관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마련

- 경력조사관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조사관 시보제 시범 운영
 - 멘토·멘티 결성, 3개월간 시보제 운영
 - 3개월간 진정사건 배당 최소화
- 기본적인 지식 배양
 - 상시학습 등과 연계 헌법, 형사소송법, 사례분석 등 프로그램 마련

- 경력 조사관들의 축적된 조사역량을 공유할 수 있는 場의 마련
 - 조사관 학교 운영
-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문 등을 통한 만족도 조사
 - 피드백을 통한 개선사항 반영, 결과보고서 작성 등

□ 장애차별에 관한 직무역량 강화

-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하게 발생하는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처리와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시의 적절한 개선방안 모색,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영역별 전문성 요구.
-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4년간 축적돼 온 위원회 결정례를 각 영역별로 분류·발간하고, 진정사건 사례에 대한 스터디 정례화, UN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참석, 장애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고양하고자 함.

- 장애차별결정례집 발간
- 장애차별 진정사건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례 스터디
-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모니터링
- 장애감수성 및 장애 특성 이해를 위한 장애 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방문
- 해외 모범적 장애시설·정신보건시설 방문
 - ※ 행정안전부 해외 교육훈련 수요 제출하여 반영 시 추진

□ 직장교육 및 위탁교육 운영을 통한 인재양성

- 직장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제공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 직원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 정형적인 교육을 탈피하여 시사문제 및 위원회 중점추진 과제 등 현실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수요가 적기에 반영된 직장교육을 추진
 -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준 높은 강사를 확보하여 교육 운영

-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직장교육 및 위탁교육 적극 도입
 - 위원회 핵심 역량·가치 관련 과정을 편성하여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교육의 연속성 보장
 - 중앙공무원교육원 직급별 기본과정 등 기본교육의 필수 이수
 - 기본적인 업무역량 향상 또는 특수한 직무(인사·예산·회계·감사·사서 업무 등)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위탁교육 실시

- 효율적인 교육실적 관리
 - 교육실적의 주기적 제공을 통해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관리하고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
 - 교육참석이 편중되지 않고 연중 균형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훈련성과의 활용도 제고
 - 장·단기 국내·외 훈련, 직장교육 등의 훈련성과를 활용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훈련성과 평가, 발표회, 훈련결과 공유 등)

□ 결정레짐 발간

- 2009년 이후 중단된 인권정책,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관한 결정레짐을 발간하여 과거 사례의 연구, 분석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인권정책결정레, 인권침해결정레 및 차별행위결정레의 발간



2011년도 업무 추진 실적 및 평가



I. 총 평

- 2011년은 인권위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제2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는 해이고, 인권현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된 해임
 - 인권위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2대 사업을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제3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2012년~2014년)을 마련하여 5대 전략목표 등 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 또한 국민의식조사 등 8개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를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추진목표인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노인 인권 향상, 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시정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추진하였음

- 추진목표를 완료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조직축소 및 정원 감축의 영향으로 조직운영의 어려움이 최고조로 달한 한해 였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무 효율화 추진, 조직 및 정원 증원 등에 전력을 다하여, 장애차별조사2과 신설, 21명을 증원하게 됨
 - 9개 전문위원회를 6개 전문위원회로 정비하여 전문위원회 운영을 합리화 하여 활성화 하였음(전년에 비해 개최횟수가 두배 증가)

- 인권의 국제규범화, 국제인권조약기구와의 교류협력이 증가하고, 특히 '기업과 인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함
 - 기업과 인권 토론회 및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내외에 기업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였고,
 - OECD 다국적 기업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NCP)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선권고를 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위한 사전 기반 마련함

- 다만, 기업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검토 및 의견제출 미흡하고, 기업의 인권경영확산을 위해 인권경영 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 사회에 인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인권교육법, 북한인권법, 차별금지법 등이 법률제정으로 이어지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또한 전년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 인권교육이 의무화된데 이어, 올해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국내 기관,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사업 수행, MOU 체결, 홈페이지 등 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함
 -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사업으로 인권보도캠페인을 전개하고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언론의 인권보도 가이드라인 제시와 언론인 인권교육 기반 구축
 - 네이버 등 3개 인터넷 사이트에 위원회 정보를 연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인 인권공모사이트(humangongmo.kr), 인권교육사이트(edu. humanrights.go.kr)를 개설 및 확대 개편으로 인권위 정보서비스 이용을 제고함
 - 인권단체에 대해 인권증진계획 초안마련시 자료 제공, 인권NAP 권고안을 위한 토론회 등에 참석 요청 등 소통을 위한 노력 지속
- 자유권, 사회권 등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관행,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정책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등을 수행함
 -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신원보증제도 개선방안 의견표명 등

-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 신속한 권리 구제 등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권조사 활성화, 조사관련 제도개선 등을 수행
 - 진정이 없으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된 경우 적극적이고 신속한 직권조사개시결정을 통해 권고결정, 고발, 징계권고, 직권조사중 종결 등을 이루어 냄(전년도 3건, 올해 16건을 처리함)
 - 조사중해결을 구제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합의종결과 같은 수준으로 처리하도록 조사구제규칙을 개정
 - 주기적으로 권고수용 현황을 파악·보고함으로써 수용률 제고에 기여 하였으며, 장기 미회신 사건에 대한 일괄정리, 조사관지정, 통계관리 및 사후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권고사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

- 중동의 민주화 진행 등 국제적인 환경변화 등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을 정부에 권고함

Ⅱ. 추진목표별 실적 및 평가

1.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1-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강화

<실적>

- 전·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 군 총기사망사고 및 구타 가혹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육군 및 해병대 영창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 도시형 고층빌딩 구조의 건물형태를 가지고 있는 미결수 신규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평가>

-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전·의경 제도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도록 제도개선을 유도함
- 군대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제안, 영창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수용자 신체검사 기준 마련, 징계수용자 면회 절차 등 개선, 영창 CCTV 관련 기록관리대장을 마련토록 함
- 신규 구금시설에 대하여 운동장 시설의 미비, 하절기 냉방 및 습도 과다, 공기 순환문제 등 환경측면에서 수용자의 건강권 문제로 접근함

1-2.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강화

<실적>

- 형법 개정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하여 자유권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 아동성폭력범죄자 외과적 치료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
-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초안과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법률 관련 헌법 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함

〈평가〉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이행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하고, 인권과 관련된 입법의 경우 입법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역할이 적극 필요함

1-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실적〉

- 제1기 인권NAP를 평가하고, 제2기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인권에 기반을 둔 국가정책수립 기반 조성
- 아동권리 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심의회에 참여하여 국제아동 인권기준의 국내이행에 기여
- 장애인권리협약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만듦

〈평가〉

- 정부에 권고할 제2기 인권NAP 권고안이 늦어지게 되어, 향후 인권NAP 프로세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인권조약기구별 업무절차가 상이하므로 위원회의 인권조약관련 업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내부 업무프로세스를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 됨.
- 유엔조약기구 활동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컨설팅 행사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사전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음

1-4. 정보인권 증진

〈실적〉

- 정보인권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기업의 강제적 개인 정보 수집, CCTV, 지문인식시스템, RFID 및 QR 코드에 의한 위치정보 수집,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관련 의견표명 및 권고

- 정보인권 릴레이 토론회를 통한 국내의 정보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
-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참석을 통한 위원회의 정보인권 업무추진 방향 설정 및 국제적 위상 강화

〈평가〉

- 개인정보보호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정보인권 교육 수요의 증가에 따른 대처가 미흡하였고,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발간이 지연되고 있음

2. 아동·노인 인권향상

2-1. 학생인권 개선

〈실적〉

- 학교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개정 교육과정 및 개정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교과서, 시도교육청, 학교현장 전반에 걸쳐 학교인권교육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점검하는 등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방안 모색
 - 대학교 인권과목 개설 현황 조사 및 개설 요청으로 대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평가〉

-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대상으로 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과서 내 인권교육 단원 확보, 교과서 개정 권고 등 학교 인권교육 기반 조성
- 각 교육청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예정인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위원회의 공식적 제정지침 또는 표준조례안의 마련이 필요함

2-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

<실적>

-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정보노트나 독립 의견서 제출과 함께 의견서 브리핑 및 심의 참가 등 조약기구 심의에 적극 대응
- 간접차별에 대한 의견표명, 입양대기아동 영상 건에 대한 의견표명
- 인권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장애인, 노숙인, 이주여성, 요양노인 등의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 아동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진행
- 아동용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2종) 및 청소년·다문화·기업 분야 인권교육 표준교안(3종) 개발
- 모의인권이사회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을 통한 청소년 인권프로그램 보급

<평가>

-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참여도 및 만족도를 증대하여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진함
-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등 청소년 인권감수성 향상 및 국제적 인권리더 양성에 기여함
- 건강권, 주거권 등 사회권의 중요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정책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이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인권과제의 발굴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2-3. 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

<실적>

-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에 대한 영문, 국문 등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집필진 간담회, 정책간담회, 지역별 순회 토론회(4회)를 개최함

〈평가〉

- 가이드 라인의 전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국의 학생운동선수 성인권 교육을 통한 현장접근을 통하여 스포츠 현장에서의 다양한 인권침해 방지에 노력함

2-4. 노인 인권보호

〈실적〉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 시설의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보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현장에서 갖는 의의 및 한계를 포착하는데 두었음
- 노인지킴이단 운영을 통한 노인인권 상황 모니터링 진행
 - 여가활동, 시설 진정함, 독거노인, 노인 일자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 노인지킴이단을 통한 노인인권 상황 모니터링이 노인 당사자 역량 강화와 주체성 강화에는 큰 역할을 하지만 정책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노인인권 개선에 있어 정책적 접근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3. 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

3-1.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실적>

- 기업과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국제회의의 개최(10.11.~10.13.)를 통한 인권 국가로서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함
 - ICC집행이사회 회의(10.10), ICC 기업인권 실무그룹회의(10.14)
 - 서울성명서(Seoul Statement) 채택

<평가>

- 국제기구, 정부,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기업가 등 기업과 인권에 관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임
- 국제행사 개최시 차년도 예산안 계획시 사업예산의 확보를 우선하여야 하고, 국제행사의 주제와 내용, 절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가 요망됨

3-2. 빈곤 계층 인권 보장

<실적>

-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에 기여
- 2011. 7. 21. 서울역이 역사 내 강제퇴거 노숙인들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 실시

<평가>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권교육 의무화에 따른 대응 필요

-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생활인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3-3. 노동 취약계층 인권보호

<실적>

- 문화·예술·스포츠 등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요양보호사 인권개선 정책 권고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호

<평가>

- 특수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조사 및 요양보호사의 정책권고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강화하고자 함

4.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4-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실적>

-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지역간담회를 통해 지역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 실태조사 및 이에 기반한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안) 권고를 통한 이주 인권의 통합적 추진체계 제시
- 위원회 중장기 다문화 인권정책실행계획 수립 사업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이주민 당사자의 의견 및 평가를 종합적으로 수렴, 위원회 사업 성과를 13개 언어로 번역함

〈평가〉

-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주민 당사자로부터 호평은 물론 위원회 홍보 효과 증대
- ‘2012-2014년 인권증진계획’과 ‘제2기 인권 NAP’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향후 3년간 우리 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 인권정책 및 아젠다의 방향성을 도출

4-2.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적〉

-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위해 기초자료 수집,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협의
- 미등록 이주자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를 실시
 - 동절기(2월) 방문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여 보호외국인의 생활환경 및 안전 시설 등에 대한 점검 강화

〈평가〉

- 정책권고 전 정책협의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 파악에 주력함으로써 권고의 효과성 배가 노력하고자 함
- “스웨덴, 스페인 등의 선진외국인보호시스템 연수”를 통하여 ‘쇠창살’로 되어 있는 국내 보호실 개선 권고

4-3. 이주여성 인권증진

〈실적〉

- 위장결혼에 따른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외교 통상부, 보건복지부 등과 관련부처 정책협의, 당사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

- 결혼이주 여성의 안정적 체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적을 취득하기 전의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의 신원보증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 논평을 발표

〈평가〉

- 위장결혼에 따른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책권고하여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계기 마련
- 2009년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한국인 배우자로부터 체류 연장시 의존 현상 개선)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표명으로 구체적 이행 효과 발생

4-4.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보장

〈실적〉

-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강화 방안 권고

〈평가〉

-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강화 관련 권고에 대하여 많은 언론 매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였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사항을 즉시 검토하고 있으며, 이 권고를 계기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층 높아짐

5.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5-1. 고용에 있어서 차별 개선

<실적>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통장·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 직권조사 실시
-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차별적 관행 요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평가>

- 통장·이장 위촉 시 나이제한 직권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속 차별 시정도모하였고, 기업에 입사지원서 표준양식 등을 제시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정년제도 일반, 공공기관의 차등정년제도, 연령차별 등과 관련된 개선 방안 도출함

5-2. 장애인 차별 개선

<실적>

- 장애인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업 인권교육을 실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3주년 토론회는 모두 7개 지역에서 토론회 개최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은행,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및 문화·체육센터를 모니터링 실시
-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에 관한 총칙 및 재화·용역 중 금융과 이동권 부분이 연구 완료

<평가>

-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토론회를 통해 지역현안에 관한 이해의 계기를 마련함
-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관협의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즉시 차별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옴

5-3.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실적>

- 정신질환 집중치료기관인 진주교도소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 상근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 전문 인력이 부재한 점, 정신질환 사동 근무자의 전문성 부족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됨
- 정신장애인차별 및 편견 해소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원에서 해남까지 당사자들이 자전거로 완주하는 캠페인을 개최하고, 거점도시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신장애인 편견해소에 일조함.
 - 또한 정신장애인차별해소 토론회를 위원회 설립 10주년 사업과 연계하여 개최함
- 정신장애인 대한 금전적 착취, 장애 학교 및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 기획조사 실시

<평가>

- 진주교도소 외에 다른 일반 교도소나 치료감호소의 상황을 점검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임. 향후 일반 교도소와 치료감호소의 실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신장애인차별 및 편견 해소 캠페인은 당사자들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점도시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신장애인 편견해소에 일조함.
-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장애시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4. 여성 인권 향상

<실적>

- 서비스 분야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해 '국가, 기업, 여성 감정노동자,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대상에 맞게 사전 간담회, 여성 감정노동자 '현장간담회', 소비자캠페인' 등 전개

- ‘여성연예인 인권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연예 관련 고교·대학 학과에 ‘여성연예인 인권보호 애니메이션’을 제작·배포함.
 - 여성 연예인의 인격권·노동권 등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인터넷 게재를 채택하여 홍보
- 성적소수자운동단체 실무자 및 활동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2011년 이슈 대담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수자 인권이슈 공유, 위원회의 연락체계 구축하여 향후 소통과 협력 도모
- 제5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APF-UNFPA 주최 재생산 권리 아태지역 워크숍,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 참가하여 여성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제출, 국제협력 및 모니터링 전개
-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사 구제업무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도모
 - 전국 4년제 대학교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현황 조사(통계 분석)
 - 학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2011. 11월) 등
 - 위원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동으로 ‘성희롱 예방 및 구제기관 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평가〉

- 서비스 분야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크고 2012년 후속사업으로 지역적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여성연예인 인권,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사건 등 인권현안에 적시 대응하여 인권개선을 위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나, 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등 관심이 필요함

6.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특별사업>

<실적>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종합적 추진 청사진을 제시한 북한인권 국가 정책 권고, 신숙자 모녀 송환권고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829명 접수) 및 북한인권기록관의 개소
- EU의회와 공동으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럽지역 전문가와 EU의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조방안을 마련
-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인권법 제정 대응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을 마련
- 북한인권 전문가 간담회, 북한인권포럼,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방안 등 토론회,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약, 탈북자 단체방문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평가>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북한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통해 정책과제 개발로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북한인권 관련 로드맵 제시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종합적 기틀 마련